건 축 전 기설비기술사 문제해설

글 / 김세동 (두원공과대학교 교수, 공학박사, 기술사 e-mail : kimse@doowon.ac.kr)







☞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 건축물의 개요, 설계 목표 및 전기설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

항목	Key Point 및 확인 사항
Key Word	녹색건축물
관련 이론 및 실무 사항	 녹색건축물의 정의 및 적용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에서의 전기설비 기준

해 석

1. 정의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(녹색 건축물의 확대)에 의하면, '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'이라고 정의하고 있다.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.

2. 설계 목표

1) 건축물의 계획, 설계/시공, 유지관리,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 조성

- 2) 친환경/무독성 건축자재, 물사용 효율화, 폐기 물 배출감소, 주변 환경과 어울림, 서울시의 인 프라를 활용한 친환경,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
 - 사례 : 3리터 하우스, 패시브 하우스(Passive House), 탄소배출 제로 빌딩(Zero Carbon Emission Building)
- 3) 자연경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 자연환경을 보전
- 4) 자연환경과 친화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 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구현

3.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

여기서는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 인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.

계획

- 신재생에너지 확대
- 에너지 절약
- 주변환경과 조화
- 친환경 건축 부문별 적용

사례/ 시공

- 친환경 인증 자재
- 고효율 에너지 자재
- 친환경 건축사례

사용 [유지관리]

- 에너지 절약
-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적용(FMS, BEMS)
- 자동조명 제어
- 건물자동화 시스템



- 폐기물 배출량 감소
- 순환골재 재사용
- 폐기물 재활용 처리
- 소음, 진통, 분진 기준 적용

건축 각 단계별 적용 기준

1) 필수 적용사항

- (1) 신축·중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LED 조명을 30% 이상 설치한다.
- (2) 수전전압 25kV 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. 단,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.
- (3)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 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.
- (5)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.
- (6)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일사광이 들어 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(7) 기존 사무기기·가전기기 재사용 등으로 대기전력이 소비되는 장소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(8) 신축·중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% 이상 차단 되도록 설치한다.
- (9)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 너지를 절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10) 에너지 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2) 설계 고려사항

- (1) 수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, 수용률, 부등율,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, 운전조건,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며,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.
- (2) 부하특성, 부하종류,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.
- (3)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 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.
- (4)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.
- (5) 층별 및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.
- (6)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하며,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.
- (7)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.
- (8)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(HID Lamp,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) 또는 LED 램프를사용하고,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(9)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.
- (10)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(11)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, 수목,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12) 옥외 광고물의 홍보전광판 등은 심야(23:00~익일 일출시)에는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[참고문헌]

- 1.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
- 2.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, 서울시, 2014